「xEV 복합구동시스템 NVH 성능평가 시험기」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

발주처 : 한국자동차연구원 전기구동연구센터(작성일자 : '26. 10. 16)

□ 공고 요청 장비

- 장 비 명 : xEV 복합구동시스템 NVH 성능평가 시험기
- 구입금액 : 4,043,000,000 원 (부가가치세 포함)
- 입찰 및 계약방법 : 일반경쟁(협상에 의한 계약)

□ 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

- **(전문성·기술성 필요)**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「미래자동차 구동계 소음진동평가 기반구축」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'xEV 복합구동시스템 NVH 성능평가 시험기'의 경우 xEV 구동계 및 핵심부품의 다양한 운전조건을 재현하고 소음·진동 및 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**특수 시험장비이므로, "협상에 의한 계약" 방식으로 기술점수(80%)와 가격점수(20%)를 합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절차를 통한 최종 낙찰자 선정이** 필요함
 - 구동모터, 감속기, 전기구동시스템 등 시험대상에 따라 동력계의 배치 및 운전 구성을 변경하고, 입력 동력계 1대와 출력 동력계 2대의 개별·연동 제어를 구현해야 함. 또한 배터리 시뮬레이터 및 냉각장치 등 부대장비와 연계하여 속도·토크·전압 패턴에 따른 자동시험을 수행해야 하므로, 개별 구성품의 규격 충족 여부 외에 제어 정밀도, 장비 간 연동성, 시험조건 재현성 및 운전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

- **(규격·가격 동시입찰 한계점)**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규격·가격 동시입찰 등과 같이 규격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입찰참가기업의 기술적 우수성, 시스템 완성도, 운영 안정성 및 사업 수행 역량을 종합적·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본 장비는 동일한 정격 출력·토크·회전속도 등의 규격을 충족하더라도 공급업체의 설계방식과 통합기술에 따라 시험 수행범위, 제어 안정성, 측정 신뢰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. 따라서 규격 적합 여부와 가격을 중심으로 한 선정방식만으로는 구축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적 우수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충분히 비교·평가하기 어려움

□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계획

- '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'을 준용하여 총원 8인 내외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원을 총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함. 발표 평가와 서류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정량적 기술능력*, 정성적 기술능력** 및 가격 점수***를 평가함으로써 입찰참가 기업의 전문성·기술성을 검증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임.

* 정량적 기술능력 : 총점 10점으로 경영상태(5점), 장비납품실적 (5점) 으로 구성

** 정성적 기술능력 : 총점 90점으로 납품계획(5점), 제안시스템 이해도(10점), 성능(40점), 설치시험 운행(10점), 안전설계(10점),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(5점), 유지보수(10점)으로 구성

*** 가격 점수 :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의 상대적 수준을 점수화하여 부여하며, 기술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가에 반영(조달청 진행)

붙임

관련 법령

□ 국가계약법 – 제 18조

제18조(2단계 경쟁등의 입찰)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·구매·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(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)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5. 25., 2008. 2. 29., 2018. 12. 4., 2024. 12. 24.>

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.

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·구매·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(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)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.<개정 1996. 12. 31., 2006. 5. 25., 2008. 2. 29., 2018. 12. 4., 2024. 12. 24.>

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1996. 12. 31.>

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1998. 2. 2.>

□ 국가계약법 – 제 43조

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·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·기술성·긴급성,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. <개정 1996. 12. 31., 2003. 12. 11., 2019. 9. 17., 2021. 7. 6.>

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.<신설 1996. 12. 31., 2019. 9. 17.>

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.<신설 1996. 12. 31.>

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.<신설 2006. 5. 25., 2013. 9. 17.>

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.<신설 2006. 5. 25.>

⑥ 삭제<2019. 9. 17.>

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, 기술능력, 사업수행계획,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,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.<개정 2006. 5. 25., 2007. 10. 10., 2008. 2. 29., 2019. 9. 17.>

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.<신설 2006. 5. 25., 2007. 10. 10., 2013. 12. 30., 2021. 3. 30.>

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,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.<신설 2006. 5. 25.>

□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– 제 3조

제3조(평가위원회의 구성) ① 평가집행자는 별표 1에 따른 평가위원수로 제안서 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규모·특성 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(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추첨으로 1인을 선정하며,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. 다만,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으나 필요시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다.

③ 삭제

④ 삭제

⑤ 위원회는 평가 전날까지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의 긴급성,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⑥ 평가위원의 분류는 통합관리규정 제8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,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⑦ 제안서평가는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.

⑧ 삭제

□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– 별표1

[별표 1]

평가위원회 구성기준(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 관련)

1. 사업금액별

사업금액	1억원 미만	1억원 이상 ~ 50억원 미만	50억원 이상
위원 수	8명	8명 이상	9명 이상

* 제10조제8항의 제안서 적합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위원 수는 5명으로 한다.

2. 평가유형별

가. 제2조제20호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제21호 대형 실물모형사업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수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나. 제2조제21의2호의 일반평가 중 수요기관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수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다.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층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통평가 위원수 9명 이상, 전문평가 위원 수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 (제3조의3 제1항의 정족수는 공통평가 위원별 및 전문평가 위원별로 각각 충족해야 한다) 다만, 평가위원 수는 수요기관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